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29. ~ 1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3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별표 1 중 총계 “135”를 “137”로 하고, 일반직 계 “134”를 “13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2”로, 전산주사 “1”을 “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36”을 “138”로 하고, 일반직 계 “135”를 “137”로 하며,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2”로, 전산주사 “1”을 “2”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8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존속기간”을 각각 “존속기한”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존속기간”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도시계획국) ① ~ ⑤ (생략)	제6조(도시계획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스마트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u><신설></u>	<u>3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58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8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도시팀은 <u>2021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3년 12월 31일</u> ----- --.

② 제1항에 따른 <u>존속기간</u>까지 스마트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u>존속기간</u>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② ----- <u>존속기한</u>----- ----- ----- ----- <u>존속기한</u>----- ----- -----.
국토교통부령 제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u>존속기간</u>) 종전의 국 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 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정원 5명(행정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시 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u>2021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하 며, <u>2022년 1월 1일</u> 이후에는 그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u>존속기한</u>) ----- ----- ----- ----- ----- ----- ----- ----- ----- ----- <u>2023년 12월 31일</u>----- -- <u>2024년 1월 1일</u> -----

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 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행정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 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명으 로 분다.	----- ----- -----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5</u>	<u>137</u>	+2
•	•	•	
•	•	•	
일반직 계	<u>134</u>	<u>136</u>	+2
•	•	•	
•	•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 는 전산사무관	<u>1</u>	<u>2</u>	+1
•	•	•	
•	•	•	
전산주사	<u>1</u>	<u>2</u>	+1
•	•	•	
•	•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6</u>	<u>138</u>	+2
·	·	·	
·	·	·	
일반직 계	<u>135</u>	<u>137</u>	+2
·	·	·	
·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 는 전산사무관	<u>1</u>	<u>2</u>	+1
·	·	·	
·	·	·	
전산주사	<u>1</u>	<u>2</u>	+1
·	·	·	
·	·	·	